참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Part 1 총칙

현 행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용도
고속철도차량	동력집중식	고속기관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고 객실이 없이 주요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철도차량
		고속동력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부속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철도차량
		고속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동력원이 없이 순수하게 객실로만 사용되는 차량
	동력분산식	고속동력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철도차량
		고속부수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는 철도차량
		고속제어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는 철도차량으로서 동력원의 탑재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구분
일반철도차량	기관차		동력집중식 열차에서 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동 차		동력분산식 열차로서 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디젤동차, 전기동차
	객 차		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 객차
	화 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		별표 2에 따른다.
도시철도차량	대형전동차		차체길이 19,500㎜ 이상, 차체폭 3,120㎜ 이상,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상을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초과 16.0톤 이하인 경우
	중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하를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6.0톤 이하인 경우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모노레일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suspended type)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LIM 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도차량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인 경우

개 정 안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분류	차종	명칭 및 용도
고속철도차량	동력집중식 고속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고 객실이 없이 주요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기관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부속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동력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동력원이 없이 순수하게 객실로만 사용되는 고속객차
	동력분산식 고속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동력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는 고속부수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는 고속제어차로서 동력원의 탑재 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구분
일반철도차량	디젤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디젤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전기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디젤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디젤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전기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전기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객차	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 객차
	화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	별표 2에 따른다.
도시철도차량	전동차	차체길이 19,500㎜ 이상, 차체폭 3,120㎜ 이상,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상을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초과 16.0톤 이하인 대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하를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6.0톤 이하인 중형전동차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suspended type)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LIM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도차량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인 경전철

□ Part 31, 41, 42, 44~47, 51~56

현 행	개 정 안
3.2.4.5 화재 감지 및 경보 1) (생 략) 2)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2) (생 략)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	3.2.4.5 화재 감지 및 경보 1)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1) (생 략) 2)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2) (생 략)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1)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5.4.15 주행안전성시험 1) 적용범위 해당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에 대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시험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차량 형식시험은 직접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차량주행시험은 단순화방법을 적용한다.	5.4.15 주행안전성시험 1) 적용범위 ---------- ---------- ---------- --------. 차량 형식시험은 최초 개발된 철도차량 또는 새로 설계된 주행장치를 포함하는 철도차량에 대해 직접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고(단, 축중 225kN, 최고속도 120km/h 이하인 특수차의 경우 차량 형식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 이미 개발된 차량 중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 차량주행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